

의안번호	제 29 호
의 결 연월일	2003. . .

의
결
사
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 연월일	2003. 8. 19.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일자	2003. 8. 19
제출자	사천시장

1. 개정이유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을 받은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2002.2.4.제정 되어 200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으로 확대적용함(안 제2조제2항)
- 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관련법률명 수정
(안 제10조 제2항)
- 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관계법령 및 적용 조항 수정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 제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2조, 제30조, 제32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세수증감사항 검토 : 약간의 자동차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현재로선 추계가 어려움
- 라. 기타
 - (1)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 (2)입법예고
 - (가)입법예고기간: 2003. 6. 5 - 6. 25(21일간)
 - (나)예고방법: 신문게시공고(경남신문외2)
 - (다)의견제출내용 및 반영: 제출된 의견 없음
 - (3)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생략)</p> <p>③(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1.~4.(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안)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u>도시계획법</u>----- ----- ----- ----- ----- -----</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 ----- ----- ----- -----</p>
<p>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u>----- ----- ----- ----- ----- -----</p>	<p>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u>----- ----- ----- ----- ----- -----</p>
<p>②<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u>----- ----- ----- ----- -----</p>	<p>②<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u>----- ----- ----- ----- -----</p>
<p><신설></p>	<p>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